



본 뉴스레터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다국적기업 고객을 위하여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Executive Summary 이므로 중대한 의사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기한 9월9일로 연기

당초 8월31일까지 마감이던 OVDI를 Irene 태풍여파로 9일간 연기 하면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에 1차 신고때와는 달리 자진신고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이유는 확실적이고 과다한 벌과금 규정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라면 적발되더라도 협상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동 마감시한까지 과거년도에 IRS에 제출하지 않은 역외은행계좌신고(FBAR)와 각종 역외거래 신고서 (Forms 5471, 5472, 3520 등)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최소 건당 \$10,000에 이르는 벌과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IRS는 \$1 million을 스위스은행 UBS에 감춰어 두었다가 적발된 New Jersey 납세자를 1년간 가택연금/3년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하였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였고(May 2011) 같은달 미국 대법원은 영주권자가 조세포탈 등 형사기소되면 추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스위스은행 수난시대 끝이 안보여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4,450명 (총예금액 180억불)의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IRS에 넘기고 올해 초 우선 255계좌에 대하여 8억불의 벌금을 합의한데 이어 IRS는 다른 스위스은행들에 대하여도 스위스 정부당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원칙대로 형사소추를 비롯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같은 문제로 지불해야하는 벌금 합의액이 도합 수백억불에 이를 것으로 유럽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다(July 2011).

## 한국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한국 국세청은 8월31일자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말까지 실시된 해외금융계좌 첫신고에서 개인 211명, 법인 314개가 참여했으며 신고금액은 총 2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은닉 혐의가 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거래내역을 익년 6월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의 범주에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한국인의 미국내 도박소득 조세부담 다른 나라보다 높아

비거주자의 미국내 도박 소득(Gambling winning)있을 때 일단 30%의 원천징수를 하며 연말에 비거주자 세금보고(Form 1040NR)를 하여 정산을 하더라도 도박 손실(Gambling loss)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잃고도 세금을 내게된다. 거주자의 경우 도박 손실금을 항목공제로 보고해 순(Net) 도박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70여 국가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 중 일본을 비롯한 20여국가와는 이러한 도박소득에 대하여

상호 면세 규정을 조세협약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비거주자가 이러한 차별대우가 조세협약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최혜국 약관”에 위배되므로 다른 20여 도박소득 면세협약 국가와 같은 대우를 해 달라며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조세법원은 해당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다며 소송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June 2011). 이 소송의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한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비거주자가 미국내 도박소득에 대하여 낸 세금 반환 청구가 붓물을 이루고 침체에 빠진 미국내 도박산업의 호재가 될 수도 있었던 소송 사건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이전가격규정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IRS의 조사 임박해

IRS 이전가격 총책임자인 Mr. Maruca는 현재 진행중인 이전가격 조사팀 정비현황을 공개하였다 (July 2011). 125개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는데 각 팀은 5-6명의 국제조사관과 경제학자로 구성된다. 현재 40-50명의 추가 인력을 보강 중이고 향후 수개월내에 무형자산이전 (intangible migration)을 포함 훈련교재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케이스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 중이며 효과적이고 정확한 절차에 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준비에 있다고 밝혀 조만간 이전가격문제가 다국적기업의 최대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IRS는 국제간 조세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제협력관 수를 늘리기로

미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작 감시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대국가 조세당국도 이전가격조사 강도를 높임에 따라 국가간 조세원 확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IRS는 국제 협력관(Competent Authority)수를 두배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June 2011). 특히 상대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 법인세에서 차감 받는 외국세액 납부공제(Foreign tax credit)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주(洲) 세무당국도 이전가격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시작해

지난해 California 주세무국이 다국적기업에 대규모 조사통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New Jersey 주 세무당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IRS에서 납세자와 체결한 APA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관련없이 자체적인 조사와 결정에 의해 이전가격규정 위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June 2011). 그동안 이전가격 위반여부는 연방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왔으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여러 주정부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Fair price) 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하여 다국적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 기타 국제조세 Update

- OECD와 IRS는 중소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안전조항(Safe Harbor)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April 2011)
- September 27, 2010 이후 발행된 보증에 대한 수수료 (Guaranty fee)는 이자로 분류하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수수료가 이전가격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내여야 한다.

### 한국 비상장법인 포함 약 2,500개 한국기업 IFRS 적용 시작되

금융감독원은 2011년 첫분기부터 적용이 시작된 IFRS가 초기 불편과 혼란은 있지만 일단 최소한 공시요건을 충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2015년 이후에나 IFRS를 적용할 것으로 발표한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IFRS를 조기 도입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많았지만 뒤 떨어진 국가신인도, 특히 열등한 회계신인도를 복구시키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경제규모나 수준에 비하여 회계신인도가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 때문에 Korea discount 등 국제시장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어 왔지만 IFRS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부실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킬라도라 한국기업

- 마킬라도라는 주로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2,500여 외국계 멕시코기업을 일컬으며 이중 한국계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150여 업체가 전자, 봉제 또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마킬라도라에 관한 혜택을 축소해

직접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을 하는 마킬라도라에 창고업, 수리 보수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마킬라도라”에 대하여 “제조 마킬라도라”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져 왔는데 전격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폐지 하였다 (January 2011).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 마킬라도라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며 서비스와 제조가 혼합되어 있는 마킬라도라도 30-40%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그 동안 마킬라도라의 혜택이 너무 광범위하게 주어져 이를 이용한 부당한 감세가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하고 기계장비의 30%는 반드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소유할 것과 제조에 의한 변환(transformation)이 일어나야 마킬라도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대통령령에 의한 마킬라도라 특별 세금감면 혜택이 올해말로 끝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IETU에 대하여 멕시코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2003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이전가격 안전조항(Safe Harbor) 3% 감세조항이 올해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마킬라도라의 조세부담이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에 뒤져 있었던 인건비등 제조원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개선되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끝나면 외국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멕시코 당국이 이러한 조세혜택을 연장할 지는 불확실하다.

### 부가가치세 (IVA tax) 규정 변경

초기 마킬라도라는 100% 수출을 해야 했었지만 멕시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내 산업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총 매출액의 90%까지 멕시코 내수 시장에 팔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수출을 전제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기계장비와 원재료에 대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한 부분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벌금 포함 계산하여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멕시코 세무당국(SAT)은 지난 7월1일부터 이러한 내수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멕시코 회계법인들은 매수자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급까지 불합리한 자금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내수 판매를 위한 별도의 회사를 차려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멕시코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마킬라도라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San Diego office (858-560-5200 or [yannikim@ckpcpas.com](mailto:yannikim@ckpcpas.com))**

CKP는 자체적 또는 RSM McGladrey와 연합하여 이전가격분석을 비롯한 국제조세분야에 Big 4 firm 수준의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수십건의 이전가격 분석, IRS와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협상, IRS 이전가격조사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KP는 다수의 한국회계사를 비롯 국제회계기준 (IFRS) 분야에도 전문화된 감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